

2018.01.02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법률안 소개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이유

-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는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되었습니다.
- 다만, 생활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은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용품 안전관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사회적 혼선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었고
- 이에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 관리 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통합시행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기용품과 생활용품간 유사한 안전관리 제도 운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시행되었습니다(17.1.28).

### <주요내용>

- ① 시험성적서 등 안전관리 증명서류 보관의무 (제조/수입)
- ②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게시 (유통)
- ③ 안전정보(KC) 표시 없는 제품 구매대행 금지 (유통)

2018.01.02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요약

- ①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추진
- ②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 특징 등 고려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
- ③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 ④ 위해도가 낮은 일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전환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일부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전환

[현행]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	------	--------------



[개정안]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 (신설)
------	------	--------------	-----------------

-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 정의 및 업종 특수성 고려하여 기존 안전관리 규제 조항 일부 예외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제도 신설
-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소비자 고지의무 신설

2018.01.02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발의 세부내용(17.9.4)

###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신설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 및 안전기준]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유형	안전기준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기준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기준
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준수(신설)	제품안전기준(신설)

\* 기존 공급자적합성 확인 품목 중 위해도 낮은 일부항목 분리 및 안전기준 준수 항목 신설을 통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의무 부담 완화

안전기준준수 대상생활용품	제품안전기준
구조·재질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확보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또는 규격

[공급자적합성확인과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의무 비교]

구분	[현 행]	[개 정 안]	
	공급자적합성확인 (39종)	공급자적합성확인 (기존항목에서 분리)	안전기준준수 (신설)
제품 시험	○	○	-
확인 의무	공급자적합성 확인 의무	공급자적합성 확인 의무	안전기준준수 확인 의무
서류비치 의무	○ (금년말 적용유예)	○	-
표시 의무	①KC마크 표시의무 ②KC마크 유사표시금지 의무 ③KC마크 변경 제거 금지 의무 ④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금년말 적용유예)	①KC마크 표시의무 ②KC마크 유사표시금지 의무 ③KC마크 변경 제거 금지 의무 ④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①고시에서 정한 표시 의무 ②없음 ③표시 변경 제거 금지 의무 ④없음
미표시제품 판매·사용 금지	○(판매·사용금지)	○(판매·사용금지)	○(판매금지)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18.01.02

(2) 구매대행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

구분	[현행]	[개정안]		
허용범위	KC마크가 표시된 제품	안전관리방법	전기용품	생활용품
		①안전인증	일부허용	일부허용
		②안전확인	일부허용	허용
		③공급자적합성확인	허용	허용
		④(신설)안전기준준수	허용	허용
고지의무	안전관련정보 홈페이지 게시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구매대행사항 구매자 고지 -구매대행제품이라는 사항 - 안전관리대상제품 여부 - 안전인증, 안전확인 표시 (해당 시)		
기타	<신설>	구매대행업자에게 자발적 구매대행 중지 의무 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구매대행 금지명령 권한 부여		

\* 구매대행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고를 두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제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구매서비스

(3) 병행수입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개선

[병행수입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구분	[현행]	[개정안]	
제품 신고	안전인증 신고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안전확인 신고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면제	
표시의무	<신설>	구매자에게 고지	1.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사항 2.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안전관리대상 표시 4.기타

\* 병행수입 : 해외상표권자의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 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세인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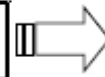
www.seincustoms.com

2018.01.02

(4) 제품의 위해성검사 의뢰 절차 신설

[제품의 위해성 검사]

제 41조 (보고와 검사 등)
① 안정성 조사 검사 이행 근거
② 안정성 조사 검사계획 통보 의무
③ 안정성 조사 검사 공무원 식별
④ 안정성 조사 검사 의뢰 기관 지정 (신설)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유무 및 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5)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자재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원자재의 안전관리]

제 47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원자재 유해성 조사 등 조사·분석 및 연구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3. 기타



조항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원료 등 원자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마련